

의 안 번 호	제 호	의 결 사 항
의 결 연 월 일	2022. . . (제 회)	

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
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원희룡 (국토교통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2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개발제한구역 입지규제로 인한 불편 해소를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 가스공급시설을 도시·군계획시설 부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시·군계획시설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, 주민의견 청취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규모의 건축물의 건축,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하여 경미한 변경의 경우에는 해당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.

또한, 택배화물 분류시설 내 가설건축물 설치규모 확대하고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를 허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

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2. . . ~ . 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7. 생산품 또는 농산물의 보관·저장을 위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

가. 기존의 공장 및 제조업소의 부지에 생산품의 보관을 위해 설치하는 임시 가설 천막(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을 포함한다)

나. 개발제한구역에서 영농에 종사하는 자(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3조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)가 개발제한구역의 토지 또는 그 토지와 일체가 되는 토지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보관·저장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저온저장고(「농업기계화 촉진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 중 농산물 저온저장고를 말한다) 및 비가림시설(저온저장고 외벽으로부터 수평거리 50센티미터 이내로 설치할 것). 다만, 기초를 위한 콘크리트 타설을 할 수 없으며, 농산물 보관·저장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

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.

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“형질변경은 제외한다”를 “형질변경과 법 제12조제1항 후단에 따라 기존에 허가받은 행위에 대해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 이 경우 경미한 사항은 부지면적 또는 건축물 연면적을 축소하는 경우에 해당하거나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2조제1항(같은 항 제2호가목은 제외한다)에 준용되는 경우를 말한다.”로 한다.

별표 1 제2호하목 중 “설치할 수 있다.”를 “설치할 수 있다. 다만, 가스배관시설을 도시·군계획시설 부지의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시·군계획시설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.”로 한다.

별표 1 제3호러목나) 중 “100제곱미터 이하의 관리용 가설건축물을”을 “200제곱미터 이하의 관리용 가설건축물(사무실, 휴게실, 화장실 등을 포함한다.)을 설치할 수 있되, 시설부지면적이 5,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면적의 1,000분의 20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을 추가로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9조(신고의 대상) 법 제12조제 3항에 따른 신고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	제19조(신고의 대상) ----- ----- -----.
1. ~ 6. (생 략)	1. ~ 6. (현행과 같음)
7. <u>생산품의 보관을 위한 임시 가 설 천막(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 지 재질로 된 것을 포함한다)의 설치(기존의 공장 및 제조업소 의 부지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 당한다)</u>	7. <u>생산품 또는 농산물의 보관 · 저장을 위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</u> <u>가. 기존의 공장 및 제조업소 의 부지에 생산품의 보관 을 위해 설치하는 임시 가 설 천막(벽 또는 지붕이 합 성수지 재질로 된 것을 포 함한다)</u> <u>나. 개발제한구역에서 영농에 종사하는 자(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3 조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 다)가 개발제한구역의 토지 또는 그 토지와 일체가 되 는 토지에서 생산되는 농산 물을 보관·저장할 목적으 로 설치하는 저온저장고 (「농업기계화 촉진법」 제</u>

2조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
중 농산물 저온저장고를 말
한다) 및 비가림시설(저온
저장고 외벽으로부터 수평
거리 50센티미터 이내로 설
치할 것). 다만, 기초를 위
한 콘크리트 타설을 할 수
없으며, 농산물 보관·저장
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
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철거
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.

8. ~ 13. (생략)

제20조(주민의 의견청취 등의 대상 및 절차) ① 법 제12조제6항 본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”란 다음 각 호의 건축 또는 형질변경을 말한다. 다만, 법 제11조제1항제5호 본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은 제외한다. 〈후단 신설〉

8. ~ 13. (현행과 같음)

제20조(주민의 의견청취 등의 대
상 및 절차) ① -----

----- . -----

형질변경과 법 제12조제1항 후
단에 따라 기존에 허가받은 행
위에 대해 경미한 사항을 변경
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 이 경우
경미한 사항은 부지면적 또는

1. · 2. (생략) ② ~ ④ (생략)	<u>건축물 연면적을 축소하는 경우에 해당하거나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2조제1항(같은 항 제2호가목은 제외한다)에 준용되는 경우를 말한다.</u> 1. · 2. (현행과 같음) ② ~ ④ (현행과 같음)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	
연 락 처	(044) 201 - 3747